



제 1169호

2014년 4월 29일 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8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규 칙 제84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5
- 규 칙 제85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8

공 고

- 공고 제2014- 826호 2014년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 11
- 공고 제2014- 833호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
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제안 17
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고 시

- 고시 제2014- 66호 도로명주소 고시 21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4년 4월 29일

남동구 규칙 제8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 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제2항 중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를 “공무원 신규 임용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구청장	4급(상당) 이상	5급(상당)이하	비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여비 미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비고: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강연으로 받을 수 있는 강의·강연료의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고
-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실시제도를 도입하여 청렴한 공직관을 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부강의 대가 기준 신설(안 제15조제2항)

구 분	구청장	4급(상당) 이상	5급(상당)이하	비고
상 한 액	300	230	120	원고료·여비 미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교육 대상 확대(안 제22조제2항)

- 신규자 → 신규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4년 4월 29일

남동구 규칙 제84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 지급 및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상시출장여비 지급대상) 조례 제2조에 따른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월 지급한도액) 상시출장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13만 8천원으로 한다. 다만,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와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국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월 지급한도액 적용을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시출장비 지급대상(제3조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업 무
상시출장공무원	1. 문서사송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시청출입) 2. 유통식품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3. 공중 및 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4.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6. 무단방치차량 현장조사 및 강제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7. 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8.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점검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9. 가로등, 보안등 점검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0. 불법 노점상 및 불법 유동광고물의 단속 및 강제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하는 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13만 8천원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13만 8천원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및 월 지급한도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상시출장여비의 지급대상자 규정(안 제3조 및 별표)
- 상시출장여비의 월 지급한도액 지급 근거 마련(안 제4조)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4년 4월 29일

남동구 규칙 제85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재직 중 비위를 행한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원면직의 제한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의원면직 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826호

2014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14년 4월 30일자로 공시된 「2014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5월 30일 까지 군·구 세무(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우편통지 해온 공동주택가격 개별통지서는 2010년부터, 개별주택가격 개별통지서는 2012년부터 중단

☐ 「2014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14년 4월 30일 ~ 5월 30일

○ 장 소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세무/재무과) 및 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콜센터(☎ 1661-7821)
-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이 소재한 구·군(세무/재무과)

☐ 「2014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4년 4월 30일 ~ 5월 30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주택소재지 구·군 및 주민자치센터(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제출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내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이의신청하거나, 군·구(세무/재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T.032-437-6771, FAX.032-437-6779)에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 조정·공시

※ 공동주택 이의신청인은 2014. 6. 25. ~ 6.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2.7>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만료된 30일 기간이 날부터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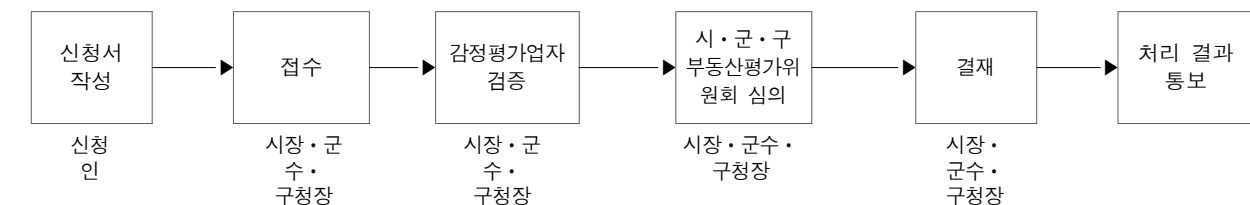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Ministry Decree under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Appraisal Act[Annex No. 13]

Appeal of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Subject Individual House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Site Area _(㎡)	
	Zoning			Floor Area _(㎡)	
	Built Year			Story	
	Building Structure			Building Types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Appellant's Opinion	
	KRW/㎡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36 of Enforcement Decree of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Appraisal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 as above.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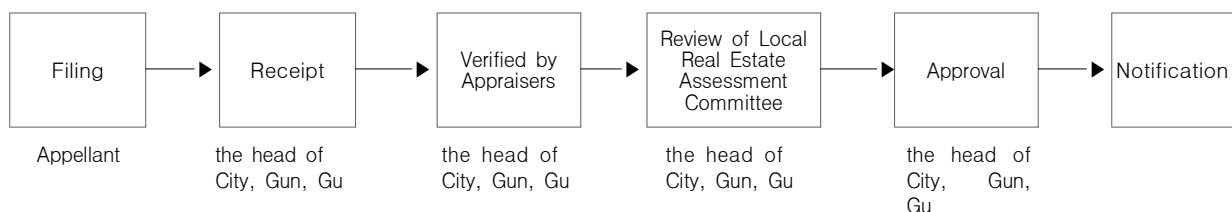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Proceedings



210mm×297mm[Ordinary Paper 60g/㎡(Recycled)]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국토교통부장관 귀하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Ministry Decree under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Appraisal Act[Annex No. 16]

Appeal of the announced price of multi-unit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	---------------	--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Subject Multi-unit House	Address & Lot No.	
	Complex Name	
	Bldg No.	Unit No.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	Appellant's Opinion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Article 49 of Presidential Decree of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Appraisal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multi-unit house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 as ab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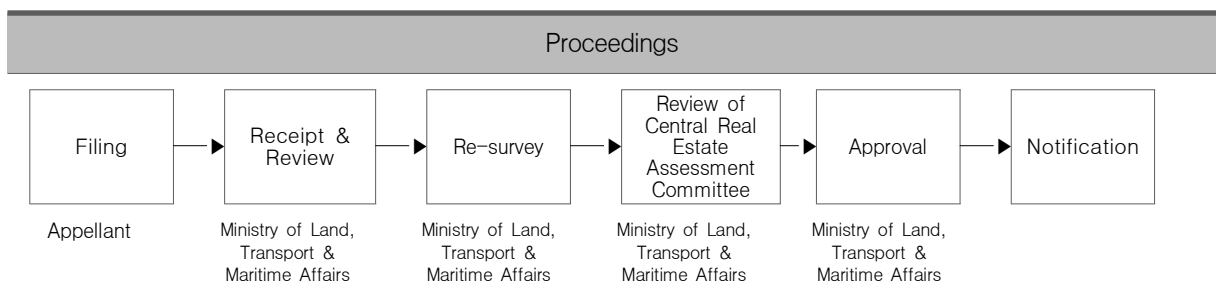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	Fee N/A
----------	---------------------------------	------------



210mm×297mm[Ordinary Paper 60g/㎡(Recycled)]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833호

-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

『정비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우리구에서는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4년 4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모집대상 :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후보

□ 접수기간 : 2014. 4. 29(화) ~ 5. 9(금) 09:00~18:00

□ 접 수 처 : 남동구청 3층 도시관리과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

□ 평가위원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비고
대학교수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관련분야 전공을 한 사람	
전 문 가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 무 원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으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중 이거나 수행했던 공무원	

※ 관련분야 : 도시계획, 건축계획, 범죄예방환경설계, 마을 공동체 분야

- 후보자 신청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은 평가 전 별도로 연락 드립니다
- 예비명부(21명) 작성 후 추첨에 의해 최종평가위원 7명을 선정합니다.

□ 용역 개요

- 용역명 :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주요내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사회·경제적 재생방안 마련

□ 평가위원 제외대상

-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붙임1】
-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붙임2】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등록신청서는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에만 활용하며, 기타 사항은 남동구 도시관리과 김정철(032-453-2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2. 평가위원 보안각서. 끝.

【붙임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최종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 관		비 고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2014 . . .

작성자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2】

평가위원 보안각서

□ 용역명 :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수행기관(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제안서 및 평가내용(평가위원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5. 제안서 평가에 공정하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6.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6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00번길 21-7외 8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57-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랍(9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랍(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4.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66-5	2014.04.2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64-29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0번길	21-7	20091116	호구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0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4.2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800번길 21-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1-7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6-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347	20091116	남동대로의 동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4.2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동로 34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47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0-7외1 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 12번길	14	20091116	만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4.2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경로 12번길 14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4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2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154번길	31	20091116	소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4.2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로 154번길 3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1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6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55	20091116	독을 굽던 골짜기 마을이었다는 지역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4.04.2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독곡로 5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5를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66-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57	20091116	독을 굽던 골짜기 마을이었다는 지역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4.04.2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독곡로 5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7을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산12-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419-29	20091116	옛날에 은이 나왔던 마을이 있었다는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4.04.2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 419-29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19-29를 건물번호로 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산1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37 5번길	63-2 2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4.2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 375번길 63-22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3-22를 건물번호로 부여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59-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37 5번길	63-2 0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4.2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 375번길 63-20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3-20을 건물번호로 부여	